



의안번호	제 2023 - 20호
보 고 연 월 일	2023. 9. 18. (제12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 I. 제156차 전체회의 ..... 1
  - 1. 일시·장소 ..... 1
  - 2. 참석자 ..... 1
  - 3. 주요 안건 ..... 1
  
- II.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2
  - 1. 개관 ..... 2
  - 2. 설정 범위 ..... 4
  - 3. 유형 분류 ..... 8
  -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 10
  
- III.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11
  - 1. 개관 ..... 11
  - 2. 설정 범위 ..... 16
  - 3. 유형 분류 ..... 18
  -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 32
  
- IV. 향후 일정 ..... 41

**【별첨】**

김용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강선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최형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김한울,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I. 제156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2023. 9. 4.(월) 15:00 ~ 18:0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2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복순, 박성훈,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설정 범위, 유형 분류)

## II.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1. 개관

#### 가. 스토킹범죄의 의의 및 특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sup>1)</sup>은 스토킹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술한 후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이외에 형사사법기관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불이행이나 피해자등 신원, 사생활 비밀의 공개 및 누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사회적 정상행동과 범죄 사이에 존재, 스토킹행위의 비정형성, 중첩성,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비약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음<sup>2)</sup>
  - 스토킹행위는 행위자가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향과 강력범죄로 비약할 가능성이 있음.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하면서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부터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제3조)와 긴급응급조치(제4조)를 통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도 이러한 스토킹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의사활동 및 결정의 자유라는 견해가 있음<sup>3)</sup>

#### 나.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스토킹처벌법이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된 후 양형통계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음

1)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약칭

2) 황순현,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구성요건 및 개정논의에 관한 검토”, 사법연수원(2022)

3) 전지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방안”, 법학논집(2022)

- 스토킹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과 실무상 필요성이 높음
- 징역형 선고 비율(약 55%)이 높고, 벌금형 선고 비율도 약 45%에 이룸 ➡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 존재

#### 다. 스토킹처벌법의 최근 개정 사항

-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일부 개정되었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같은 날 시행되었음
  - 전자장치 관련 신설 벌칙 조항은 2024. 1. 12.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규정에서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등 신원,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금지
  - 전자장치 무효행위, 피해자등 신원,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변경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라. 대상범죄 구성요건

##### (1) 스토킹처벌법<sup>4)</sup>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8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3년↓ 3,000만 원↓
§ 18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5년↓ 5,000만 원↓
§ 20①	1호	제9조 제4항 위반하여 전자장치 효용 해치는 행위	3년↓ 3,000만 원↓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신설 범죄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호	제17조의3 제1항 위반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피해자등 신원,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행위	
	3호	제17조의 3 제2항 위반하여 피해자등 신원 인쇄물 게재·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공개	
§ 20②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2년↓ 2,000만 원↓
§ 20③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1,000만 원↓
§ 20④	1호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 지시 불응	500만 원↓
	2호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 불이행	1년↓ 1,000만 원↓

## (2) 정보통신망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74①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1년↓ 1,000만 원↓

## 2. 설정 범위

### 가. 일반적 기준

-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발생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함
-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에는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한 점,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양형의 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나. 설정 범위 포함 ⇨ 견해 일치

- (1)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및 제2항(흥기등휴

## 대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 범죄임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충분한 실무례가 축적되어 있음

### (2)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잠정조치 불이행)

-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한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임
-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실무례가 축적되어 있고 발생 빈도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잠정조치 불이행 범죄는 후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커 후속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고, 범죄 자체의 죄질도 중하다고 보임 ➡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큼

## 다. 설정 범위 제외 ⇨ 견해 일치

### (1)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전자장치 무효)

- 개정 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위 별칙 조항은 2024. 1. 12.부터 시행 예정임 ➡ 양형 실무례를 확인할 수 없어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함
- 전자장치 무효 범죄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보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음
- 양형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2)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해자등 신원, 생활 비밀 공개·누설)

- 개정 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위 별칙 조항은 최근 시행



되었음 ➡ 양형 실무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함

- 양형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범죄는 행위주체가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발생 건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행위태양이 유사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향후 양형 실무례가 축적된 후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4항 제1호, 제2호(이수명령 불이행)**

- 개정 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위 벌칙 조항은 최근 시행되었음 ➡ 양형 실무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함
-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고,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였음
- 스토킹범죄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형태의 범죄와는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등을 달리하고 국민적 관심도도 적어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4)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현재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02<sup>1</sup>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스토킹범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하여(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에 존치)
  - 별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구성요건도 상이함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2023. 7. 1.)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실무상 양 죄에 모두 해당할 경우 대부분 법정형이 중한 스토킹범죄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발생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삭제, 수정 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라.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포함 여부

⇒ 견해 대립

(1) 제1안(포함, 10인)

- 법개정으로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전환한 것이고, 법정형이 잠정조치 불이행죄보다는 낮지만, ① 잠정조치 불이행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위반)하여, 양형인자를 공통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잠정조치 불이행죄와 법정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비록 양형 실무례가 없어도 규범적 판단에 의한 형량범위의 설정이 가능하며, ③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실익의 큼

(2) 제2안(제외, 3인)

- 개정 후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위 벌칙 조항은 최근 시행되었음 ➡ 양형 실무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 등이 곤란함
- 양형 실무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함. 양형 실무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
-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고(1년 ↓, 1,000만 원 ↓),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였음

### 3. 유형 분류

#### 가.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 나.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

##### (1) 대유형 1 ⇨ 견해 일치

-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등 위반 사이에서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유형 1의 명칭을 '스토킹범죄'로 함
- 대유형 '스토킹범죄'의 소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일반 스토킹범죄와 ②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로 분류함

## 01<sup>1</sup>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2	휴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2) 대유형 2 ⇨ 견해 대립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포함 여부에 따라 대유형 2의 명칭 및 소유형 분류에 관하여 견해 대립

#### (가) 제1안(10인)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견해

## 02<sup>1</sup>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2	잠정조치 위반			

#### (나) 제2안(3인)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견해

## 02<sup>1</sup> 잠정조치 위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잠정조치 위반			

##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 01<sup>1</sup>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sup>1</sup>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2	잠정조치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Ⅲ.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1. 개관

##### 가. 마약범죄 양형기준 연혁

- 2011. 3. 21. 설정, 2011. 7. 1. 시행
- 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 2020. 9. 14. 수정, 2020. 10. 15. 시행
- 그 후 수정은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나.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 개정

- 2023. 3.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sup>5)</sup> 제59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하고, 동법 제58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2023. 9. 29. 시행)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 법정형 1년↑ → 2년↑

#####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sup>6)</sup> 반영 필요성

- 마약류 범죄의 영업범에 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양형기준 無
- 양형기준 설정대상 포함 여부 검토 要

##### 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 마약범죄의 대량화·조직화·지능화 추세에 따른 양형 강화 요청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나 수량에 따라 죄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有 → 마약류의 가액이나 수량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다양한 방안 검토 要
- 관련 통계

▶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vs 집행유예 비율 [’22년 ‘사법연감’(대법원) 통계 참조]  
- 실형 선고 비율은 ’19년 53.7% → ’20년 50.6% → ’21년 **48.1%** 감소 추세  
-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9년 36.3% → ’20년 38.1% → ’21년 **39.8%** 증가 추세

5) 이하 ‘마약류관리법’으로 약칭

6) 이하 ‘마약거래방지법’으로 약칭

▶ **마약사범의 재범률** [연도별 법무연감(법무부) 통계 참조]

- 마약사범 재범률 : '20년 32.9% → '21년 36.6%
- 형사사건 재범률 : '20년 25.2% → '21년 24.6%

## 마. 적용법조

### (1) 마약류관리법<sup>7)</sup>

#### 제2조(정의)

-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sup>8)9)</sup>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법률 제19322호(2023. 3. 28. 개정, 2023. 9. 29. 시행)를 기준으로 하고, 2020년 양형기준 수정 이후 개정된 조문은 음영 처리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58조(벌칙)**

①	1. 마약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2. 마약·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3.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소유 4.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식물에서 성분 추출 또는 그 식물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5. 대마 수입·수출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6.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7. 미성년자에게 마약 수수·조제·투약·제공 또는 향정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8. 1군 임시마약류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무기 / 5년 ↑
②	영리목적·상습으로 ①항 행위를 한 자	사형 / 무기 / 10년 ↑

**제58조의2(벌칙)**

①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또는 대마·대마초종자껍질 흡연·섭취	2년 ↑
②	상습으로 ①항 행위를 한 자	3년 ↑

**제59조(벌칙)**

①	1.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마약 원료식물 재배 또는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2. 마약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관리·수수·성분 추출 3. 헤로인 등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투약 위해 제공	1년 ↑
---	---	------

8) 이하 ‘향정’으로 약칭

9) 각 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로는 가목: LSD/ 나목: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다목: 펜타조신/ 라목: 졸피뎀, 프로포폴



	<p>4. 마약·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소유·사용</p> <p>5.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소지·소유·사용·관리</p> <p>6.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식물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p>7. 대마 제조 매매·매매알선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p>8. (삭제)</p> <p>9.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또는 한외마약 제조</p> <p>10. 제2조 제3호 다목 향정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p>11.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 재배</p> <p>1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관리법에 기하지 않은 마약류(대마 제외) 취급</p> <p>13. 1군 임시마약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p> <p>14.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아닌 자의 향정 수출입·제조 또는 의약품 제조</p>	
②	상습으로 ①항 행위를 한 자	3년 ↑

### 제60조(벌칙)

①	<p>1. 마약·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사용 또는 마약·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관련 금지행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p> <p>2. 제2조 제3호 나·다목 향정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처방전 발급</p> <p>3.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 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p>4. 마약류취급자 등의 업무 외 목적 마약 사용 등·마약류취급자의 非마약류취급자로부터의 마약 양수·마약류소매업자 아닌 자의 마약 판매·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아닌 자의 마약 투약 등·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닌 자의 학술연구 목적 마약 사용·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무허가 마약 투약 등</p> <p>5. 1군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제공</p> <p>6. 2군 임시마약류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10년 ↓ / 1억 원 ↓
②	상습으로 ①항 행위를 한 자	1/2 가중

### 제61조(벌칙)

①	<p>1. 향정(제2조 제3호 가목 제외)·대마 사용 또는 향정(제2조 제3호 가목 제외)·대마 관련 금지행위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p> <p>2. 마약 원료식물 재배 또는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p> <p>3.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 원료식물 흡연·섭취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p> <p>4. 대마·대마초종자껍질 흡연·섭취 또는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껍질 소지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껍질 매매·매매알선</p> <p>5.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처방전 발급</p> <p>6.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p> <p>7. 마약류취급자 등의 업무 외 목적 향정 등 사용 등·마약류취급자의</p>	5년 ↓ / 5,000만 원 ↓
---	--	-------------------

	非마약류취급자로부터의 향정 등 양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닌 자의 학술연구 목적 향정 등 사용 8. 2군 임시마약류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 또는 같은 목적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9. 무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제조 10. 마약류 통합정보의 개인정보 업무상목적 외 이용 10의2. 마약류수출입업자의 무허가 마약·향정 수출입 10의3. 마약류제조업자의 무허가 마약·향정 제조 10의4. 마약류원료사용자의 무허가 한외마약 제조 11. 마약류소매업자 아닌 자의 처방전에 기한 향정 판매·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아닌 자의 의료 목적 향정 투약 등 12. 마약류소매업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 판매	
②	상습으로 제1항 행위를 한 자	1/2 가중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①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교부 및 매매·매매알선·수수 목적 소지·소유 제외) 및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1. 마약·향정 가액 5,000만 원 이상	무기 / 10년 ↑
	2. 마약·향정 가액 500만 원~5,000만 원	무기 / 7년 ↑
②	마약류관리법 제59조 ①항 내지 ③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향정에 한정)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	
	1. 마약·향정 가액 5,000만 원 이상	무기 / 7년 ↑
	2. 마약·향정 가액 500만 원~5,000만 원	무기 / 3년 ↑

##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정의)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9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6.	환각물질 섭취·흡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 또는 섭취·흡입하려는 자에게 알면서 판매·제공	3년 ↓ / 5,000만원 ↓
----	--	------------------

## 2. 설정 범위

### 가. 마약류관리법 개정 조문 ⇨ 제외(견해 일치)

### 제61조(벌칙)

①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10의2. 마약류수출입업자의 무허가 마약·향정 수출입 10의3. 마약류제조업자의 무허가 마약·향정 제조 10의4. 마약류원료사용자의 무허가 한외마약 제조	5년 ↓ / 5,000만원 ↓
---	---	------------------

○ 2021. 8. 17. 개정·시행

○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에 관한 허가를 받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임

○ 현행 양형기준은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① 투약·단순소지 등, ② 매매·알선 등, ③ 수출입·제조 등을 설정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위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그 성격이 다름

○ 현재까지 위 조항 적용 사례가 없고,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낮음

### 나. 마약거래방지법

#### (1)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 포함(견해 일치)

###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법 제58조[④항(예비·음모) 제외], 제59조 ①항 내지 ③항(같은	사형 / 무기 /
---	---	-----------

	조 ①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①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10년 ↑
②	마약류관리법 제59조 ①항 내지 ③항(같은 조 ①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①항 제2호(미수범, 상습범 포함)·제3호(미수범, 상습범 포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3년 ↑

-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영업범에 대한 처벌 규정임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 대상범죄와 그 성격이 같음
-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4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가 액이 일정 액수 이상인 범행을 설정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와의 균형상 영업범도 설정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 없음
- 2011년 설정 당시에는 양형사례가 적어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후 양형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설정의 필요성 ↑

## (2)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 제외(견해 일치)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 <sup>10)</sup> 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3년 ↑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	5년 ↓

- 실제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약물을 수출입 한 범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임
-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원료도 아니고 마약류로서의 위험성도 없는 물품을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규정취지가 있음

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6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 '마약류로 인식한 약물 등'은 실제 마약류가 아니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고 설정의 필요성 ↓

### 3. 유형 분류

#### 가. 개관

##### (1) 유형 분류의 전제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 (2) 현행 양형기준의 체계

- 마약류범죄는 제조·재배 등 생산, 수출입/ 매매·알선 등 유통/ 소지·소유 등 점유/ 사용·흡입 등 소비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파급효과나 행위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고,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등으로 구분되고 종류별로 약리작용, 의존 및 중독성 등 그 피해의 중대성이 다름
- 대유형의 구분: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① 투약·단순소지 등, ② 매매·알선 등, ③ 수출입·제조 등으로 대유형을 분류하되, 고액의 마약사범의 경우 ④ 대량범(∵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 규정)을 독립시켜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 → 총 4개의 대유형으로 구분함
- 소유형의 구분: 각 대유형 내에서는 환각물질, 대마, 가.목 내지 마.목 향정, 마약과 같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누되, 매매·알선 등 대유형과 수출입·제조 등 대유형에서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구분(∵ 법정형이 현저하게 높음)

#### 나. 제1유형(투약·단순소지 등) ⇨ 기존 유형 분류 유지(견해 일치)

##### (1) 현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2) 수량 및 가액에 따른 유형 분류 여부(대유형 1, 2, 3 동일 점) ⇨ 소극(견해 일치)

- 마약류 수량 및 가액에 따라 죄질에 차이가 있고, 단일범 및 포괄 일죄에 대해서는 가액이 높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서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이는 대유형 4(대량범)에 반영되어 있음
-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사범이 취급한 중량을 양형기준의 중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양형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모든 마약 유형을 마약 취급 중량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고,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마약류 가액에 따라 대량범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형 분류에서 반영하기 곤란
- 다만,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높더라도 다수범 가중에 의해 3개 범죄(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까지만 가중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형 분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함
  - 유형 분류를 통해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식품·보건범죄)과 같은 방법을 상정해볼 수 있음

01<sup>1</sup>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03<sup>1</sup>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현행 양형기준을 기초로 1-2유형(대마 투약)과 1-3유형(필로폰 투약)을 합하면 가액이나 수량이 많아지는 경우, 이를 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과 같이 1-4유형(마약, 향정 가.목 투약)에서 처리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는 방법 → 양적인 차이를 이유로 질적으로 다른 유형을 적용하는 것은 어색함
  - 모든 마약 유형을 가액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재분류 하는 방법 → 양형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지나치게 유형을 세분화 하면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
  - 법정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약의 가액과 수량에 법정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태양, 마약의 종류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마약의 규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 가액과 수량이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추정

액 산정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추정액의 산정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대량범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을 기준으로 함],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마약 가액만으로 기준 산정 어려운 경우 多 → 마약사건 심리부담의 가중

- 다음과 같이 추후 다른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마약의 수량이 많거나 가액이 높은 경우 형량범위표 아래에 서술식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법(예: ○○○인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형량범위 단계에서 검토
  - 마약의 수량이 많거나 가액이 높은 경우 양형인자표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법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단계에서 검토

**다. 제2유형(매매·알선 등) ⇨ 견해 대립**

**(1) 현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2)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 중유형 신설 방안**

**(가) 중유형 신설 여부 ⇨ 적극(견해 일치)**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기존 2-2유형): 법정형 1년 ↑ → 2년 ↑ (2023. 3. 28.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3. 9. 29.]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범행(기존 2-3유형): 법정형 5년 ↑
-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을 법정형 순서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순번	구분	해당법조	법정형
1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2년↑ 유기
2	상습 대마 제공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	3년↑ 유기
3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을 별도 유형으로 설정함이 타당
  -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취지 고려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행의 경우 기존 양형기준과 다른 새로운 양형인자 발굴을 검토해 볼 여지 충분
- 별도 유형 설정 방법은 중유형으로 분류함
  - 기존 양형기준의 대유형 2 ‘매매·알선 등’ 양형기준표 → 대유형 2 ‘가. 일반 매매·알선 등’으로 이동하고 기존 유형 분류 유지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매매·수수 등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 02<sup>1</sup> 매매·알선 등

가. 일반 매매·알선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나) 소유형 분류 ⇨ 견해 대립

① 제1안(10인)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은 위 표와 같이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대마			
2	마약, 향정 등			
3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상습 대마 제공 등(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의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다른 유형처럼 제1소유형에 포섭하여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이 없음

② 제2안(3인)

-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함이 타당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대마 제공 등			
2	상습 대마 제공 등			
3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제공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제공 등			

라. 제3유형 (수출입·제조 등) ⇨ 일부 수정(견해 일치)

(가) 현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등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나) 대마수출입 범행의 유형 분류 수정 ⇨ 견해 일치

○ 대마 수출입 범행은 현행 양형기준상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음

03 <sup>1</sup> 수출입·제조 등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향정 다.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대마 수출입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중함에도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들과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고, 그 이유는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경함에도 유독 수출입 범행의 법정형이 높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22. 3. 31. 2019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이 이루어짐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9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

대마의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이며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대마 수입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대마의 반입 경위나 동기, 대마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이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되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만 치료용으로 허가된 대마를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대마의 수입 및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동종 결합 포함)의 양형통계를 보면, 징역 2년6월과 3년이 대부분임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경우 多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 많은 점)
- 수정방안
  - 유형 분류의 변경: 대마 수출입을 법정형이 동일한 범행이 규율되어 있는 제3유형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함
  - 추후 특별감경인자 추가 필요성: 대마 수출입의 기본영역이 ‘2년 - 4년’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4년 - 7년’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감경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 수출입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하는 방안
- 위 논의사항을 종합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음

### 03<sup>1</sup> 수출입·제조 등

나.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li>●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li>● 1년 이상의 유기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징역</li> </ul>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li>●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향정 원료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대마</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a>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li> </ul>

마. 제4유형 (대량범) ⇨ 견해 대립

(1) 현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2)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의 반영 ⇨ 견해 일치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를 법정형 순서대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고, 일정 액수 이상의 대량범을 규율하는 대유형 4와 유사함

순번	구분	해당법조	법정형
1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향정 제외), 제9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2	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은 제4호(마약 제외) 내지 제7호, 제10호 내지 제13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3년↑ 유기

- 현행 양형기준상 대유형 4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음

04 <sup>1</sup>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li> </ul>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li>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ul>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 제1유형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 제3유형
- 위 논의사항을 종합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음

## 04<sup>1</sup>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li> </ul>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li>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ul>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u></li> </ul>

### (3) 소유형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 (가) 제1안(기존 소유형 유지, 8인)

- 현행 양형기준의 대량범 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가액 기준 500~5,000만 원 구간/ 5,000만 원 이상 구간), 대량범 유형을 추가로 세분화하기는 어려움
- 대유형 4. 대량범 내에는 5,000만 원 이상의 구간이 제2유형에도 있고 제3유형에도 있는데, 제2유형을 그대로 두면서 제3유형만 10억 원 구간을 더 나누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징역 10년 이상의 구간을 다시 나누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연혁적으로 볼 때, 2020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개정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이 있었으나 2020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당시 이를 폐지함
  - 2020년 마약범죄 개정 검토 과정에서 ①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500만 원/ 5,000만 원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제4-2유형 중 3,000-5,000만 원에 속한 사안은 2건에 불과한데, 실제 양형이 500-3,000만 원 구



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과 같이 수정함

- 위와 같은 연혁에 비추어, 다시 규정에 없는 금액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양형통계를 고려하여 현행 양형기준이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면 향후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제2안(소유형 추가, 5인)

-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의 규모가 10~50kg, '21. 하반기에는 코카인 400kg, 필로폰 400kg 2건이 적발되는 등 국내유통 마약류의 규모가 점차 거대화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가액 기준액 500만 원과 5,000만 원은 필로폰 도매가 기준 환산시 50g과 500g에 불과하고,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양형기준상 가중구간 최대 상한이 징역 14년에 불과하므로 가액 기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유형 분류 추가 필요
- 법률상 5,000만 원 이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법률이 세부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공백을 양형기준으로 보완할 필요 있음
-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조세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특가법상 기준액을 초과한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양형기준]

## 02<sup>1</sup>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2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9년	8년 - 12년

○ 다음과 같이 10억 원 이상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 04<sup>1</sup> 대량범

###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li> </ul>

###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li>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ul>

###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 <b>10억 원 미만</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 다. 제4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b>10억 원 이상</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 4. 전문위원단 다수의견 요약

##### 01<sup>1</sup>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4	마약, 향정 가.목 등			

##### 02<sup>1</sup>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3	마약, 향정 가.목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대마			
2	마약, 향정 등			
3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03<sup>1</sup>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2	대마제조, 향정 다.목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04<sup>1</sup>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	제2유형			
3	제3유형			

[유형의 정의]

### 01<sup>1</sup> 투약·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각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li> <li>●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li> <li>●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가.목 원료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군 임시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가중</li> </ul>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다.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가중</li> <li>● 1/2 가중</li> </ul>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li> <li>●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로인, 염류, 함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라.목</li> <li>● 소지·소유·사용·관리</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군 임시마약</li> <li>●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li> <li>●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징역</li> <li>● 1/2 가중</li> </ul>

## 02<sup>1</sup>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1)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각물질</li> <li>● 판매·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라.목</li> <li>● 매매·알선·수수·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 등</li> <li>● 대마 수수</li> <li>●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군 임시마약</li> <li>●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가중</li> </ul>

(2)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나.목</li> <li>● 매매·알선·수수·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다.목</li> <li>● 매매·알선·수수·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li> <li>●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li> <li>● 관리·수수·성분 추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향정 원료물질</li> <li>●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가.목 원료식물</li> <li>●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del></li> <li>● <del>수수·제공·흡연·섭취</del></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del>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del>1년 이상 징역</del></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징역</li> <li>● 1/2 가중</li> </ul>

(3)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li> <li>●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li> <li>※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가.목</li> <li>●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li> <li>※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군 임시마약</li> <li>●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 마약류 범죄</li> <li>●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li>※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4)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li> <li>●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li>●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향정</li> <li>●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li>●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1) 제1유형(대마)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li> <li>● 수수·제공·흡연·섭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징역</li> </ul>

(2) 제2유형(마약, 향정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 마약류 범죄</li> <li>●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li>※ 상습범은 3유형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ul>

(3) 제3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li> <li>●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li>●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li>●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 03<sup>1</sup> 수출입·제조 등

###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원료식물</li> <li>●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초</li> <li>●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라.목</li>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군 임시마약</li> <li>●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li> <li>●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징역</li> <li>● 1/2 가중</li> </ul>

### 나. 제2유형(대마제조,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마</li> <li>●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li> <li>※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li> <li>●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li>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 <li>● 1년 이상의 유기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정 다.목</li> </ul>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 1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u>대마</u> ● <u>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u> ※ 상습범은 4유형에 포함	● <u>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u>	● <u>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u>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04<sup>1</sup> 대량범

###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3년 이상의 유기징역</u></li> </ul>

###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li>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li>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li>●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li> </ul>

###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업으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 제외),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은 제외)]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u></li> </ul>

## IV. 향후 일정

- 일시: 2023. 10. 23.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권고 형량범위)